



SEOUL CAMPUS

2025년 1학기

휴학/ 복학/ 자진유급 신청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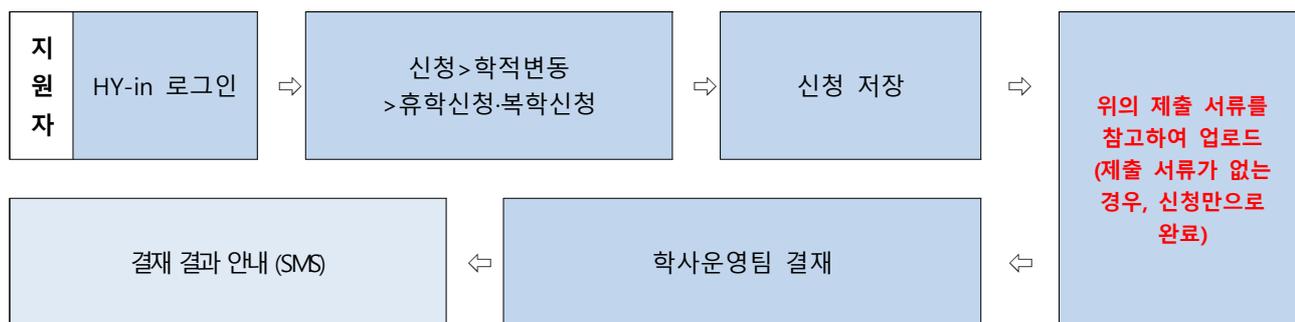


휴학/ 복학/ 자진유급 신청

□ 신청 기간

구분	일자	제출서류 (비고)
휴학	2025.01.06.(월) - 01.17.(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일반휴학 : 온라인 신청만으로 완료 • 일반휴학(질병 사유 시) : 휴학신청서, 진단서(종합병원 4주 이상) • 입대휴학 : 온라인 신청만으로 완료, 입영통지서 스캔본(촬영본) 첨부(서류 업로드 가능) • 기타휴학 : 휴학신청서, 기타휴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직접 제출
복학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규복학/ 자진유급복학 : 온라인 신청만으로 완료(자진유급복학 제출서류 없음) • 입대휴학 후 복학 : 온라인 신청만으로 완료, 전역증 스캔본(촬영본) 첨부(서류 업로드 가능)
자진유급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온라인 신청만으로 완료 (2025-1학기부터 서류 미제출)
추가 휴·복학· 자진유급복학	2025.01.21.(화) - 01.27.(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규복학/ 자진유급복학 : 온라인 신청만으로 완료 • 입대휴학 후 복학 : 온라인 신청만으로 완료, 전역증 스캔본(촬영본) 첨부(서류 업로드 가능) (등록금 납부 후 휴학 희망자는 등록금 생성일 이후 신청)
학업연장자 휴학	2025.02.24.(월) - 02.25.(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학위수여식(02.21.) 이후 신청 가능 • 특별휴학(6개월) : 온라인 신청만으로 완료 - 특별휴학은 학업연장자이면서 해당학기에 필수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

□ 신청방법 및 업무 흐름





□ 신청 시 유의사항

■ 휴학

1) 일반휴학 : 서류 제출 없음

-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학으로 재적기간 중 총3년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며, 1학년 2학기(1학기 이상 성적 유효) 이상의 재학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(단, 2025학년도 1학기부터 3년을 초과하여 일반휴학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, 지도교수 상담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. 이 경우, 학사운영팀으로 사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)
- 질병의 사유로 신청 시 1학년 1학기부터 신청이 가능하며, 신청 시 종합병원(의과대학은 상급종합병원) 4주이상의 진단서를 발급하여 첨부파일로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일반휴학은 1년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, 6개월 휴학 후 복학을 희망하는 경우, 휴·복학 신청 기간에 맞추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- 1년 휴학을 소진한 이후,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 후 재신청해주셔야 합니다. 복학 후 재휴학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, 휴학만료 제적 처리됩니다.
- 학사학위취득유예생, 수료생은 휴학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
2) 입대휴학 :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(병무청 발행/ 입영일 한달 이내로 신청)

- 기본 3년으로 자동 설정되어 있으며,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의 해당학기에 복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신청 시, 입영통지 1달 이내로 신청하여 주시고 관련 서류를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 - 순수입대휴학 : 재학생 상태에서 입대휴학을 신청할 경우
 - 일반입대휴학 : 휴학생(일반휴학) 상태에서 입대휴학을 신청할 경우
- 일반휴학 후 입대휴학으로 전환하는 경우
 - 입영 일자가 학기 중일 경우 일반휴학 신청 후 입대휴학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. 일반휴학 후 7주 이내 입대 휴학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일반 휴학기간은 소진되지 않습니다.

3) 특별휴학 : 학업연장미수강, 강제유급으로 일반휴학 외에 별도로 부여되는 휴학

- 학업연장미수강(6개월) : 학업연장자이면서 해당학기에 필수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.
- 유급휴학(6개월) : 학사경고로 인하여 강제 유급된 학생은 1회에 한하여 한 학기 휴학을 실시하며, 성적처리 후 시스템에서 강제로 처리되는 것으로 학생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- 징계휴학 : 시스템에서 강제로 처리되는 것으로 학생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
4) 기타휴학 : 예외로 허가하는 휴학

- 고시 2차준비 사유로 사법시험, 군법무관임용고시, 5급공채시험(행정직, 외무직, 기술직), 입법고시, 공인회계사 및 변리사 1차 시험에 합격한 학생에 한하여 1회 1년 이내 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. (신청 시, 1차 합격증을 첨부파일로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- 연수원교육의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1회 1년 이내 휴학 연장 허용합니다.
- 임신 또는 출산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여학생의 경우 와 만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키 위한 휴학에 대하여 자녀 1명당 1년 이내의 휴학을 허용합니다.
- 창업휴학은 휴학사유가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3년(6학기)까지 허용하는 휴학을 말하며, 일반휴학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. (주관부서: 글로벌기업가센터 02-2220-2865).
단, 인턴십의 사유로 1년 이내의 휴학을 사용한 학생의 창업휴학 경우 1년 이내의 휴학을 연장 허용합니다.



□ 신청 시 유의사항

■ **복학** 신청 시 복학하는 학년과 학기를 구분 입력하며, 정규복학/ 월반복학/ 자진유급복학이 가능합니다.

1) 정규복학 : 입대휴학 후 복학자 서류 제출 필요

- 입대휴학 후 정규복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,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을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개강일 이후 전역예정자 중, 휴가를 이용하여 수업일수 2/3를 채울 수 있는 경우에는 개강 전 복학허용을 받아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며, **전역예정증명서와 사유서**를 작성하여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) 월반복학

- 6개월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에게 해당하며, 월반(건너뛴)학기에 설강되는 필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. 미필 또는 선수강과목 미이수, 수강신청 학년 제한, 교과목 시간표 중복 등으로 희망하는 시기에 졸업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전공 학부로 입학한 학생 중, 전공 미배정자는 2학년으로 월반복학 할 수 없습니다.

3) 자진유급복학

- 자진유급 가능학기는 최대 8학기이며, 재적기간 중 총 2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으며, 입대휴학 이후 자진유급복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을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자진유급 (2025-1부터 서류 제출 없음)

- 자진유급 가능학기는 1회당 최대 8학기이며, 재적기간 중 총 2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자진유급을 하는 경우 선택한 학년/학기의 모든 성적은 폐기되며, 계절학과와 군E-러닝학기 성적은 학기별로 선택 폐기 가능하나 일부과목 선택 폐기는 불가합니다.
- 자진유급이 결재된 이후에는 삭제된 성적이 복구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4학년 마지막 학기(졸업예정자, 학업연장자)학생은 자진유급을 할 수 없습니다.
- 자진유급으로 성적을 삭제시키더라도 학사경고 횟수는 차감됩니다.